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612호

의 안 명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의 결 일 2023. 7. 10.

주 문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과 농촌진흥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7월 10일

위원장 김홍일

위 원 정승윤

위 원 김태규

위 원 박종민

위 원 임성문

위 원 방이엽

위 원 손난주

위 원 강길연

위 원 최정묵

위 원 송현주

위 원 홍세욱

위 원 홍봉주

(별 지)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2023.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제도 및 민원·판례 분석 ····· 2

Ⅲ. 문제점 ····· 11

1.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의 미비 ····· 11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의 미정 ····· 12
3. 불합리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 규정 ····· 14
4.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공백 ····· 15
5. 선의의 양수인 실질적 보호 규정 미흡 ····· 17

Ⅳ. 국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결과 ····· 20

1. 국민 의견수렴 결과(국민 생각함) ····· 20
2. 전문가 자문 결과 ····· 23

Ⅴ. 개선 방안 ····· 26

1.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 마련 ····· 26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 마련으로 불확정성 해소 ····· 27
3. 제도취지에 어긋난 승계기간 취지에 맞게 개선 ····· 28
4.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 보완 ····· 29
5.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 30

Ⅵ. 조치사항 및 기한 ····· 31

[붙임 1] 과제 5 대상 법령 및 피권고 기관 목록 ····· 32
[붙임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 33
[참고 1]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입법례 비교 ····· 49
[참고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가안 (5.10. 공청회 자료에서) ····· 52

Ⅰ. 추진배경

국정과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이며, 그 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VIP, '22.8.26.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기업활동 · 국민생활에 불편 · 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국정과제 16번)

□ 추진배경

○ **행정상 부과되는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의무 위반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규정을 운영**

- **행정제재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의 효과를 승계**할 필요

○ 한편, **장기 불황에 놓여 있는 경제여건** 상 **원활한 사업의 양도 · 양수**는 산업계의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중요**

- 그러나,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고, **행정목적 달성**만을 위해 **양수인을 악의로 추정**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는 실정**

○ 이에 현행법령의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입법례를 비교 · 조사하고, 판례·해석례 및 민원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양도 · 양수**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23.4.22.(입법례 조사 · 비교 및 민원·판례 분석)

○ 전문가 · 국민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 '23.5월

○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협의 : ~ '23.5월

Ⅱ. 관련제도 및 민원 · 판례 분석

□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취지

○ **(영업의 승계)** 시설의 양수인이 다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인정**

※ **대물적 허가는 가능**, 대인적 허가는 불가, **혼합적 허가는 법률 규정 필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10.6.23. 법제처 보도자료 중에서 발췌〉 법제처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이 있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등과 달리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안마업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를 소정의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의 수리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로부터 해당 안마시술소를 양수한 자가 당연히 종전의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개설자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역시 새로운 개설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필요성) 위반행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양도함으로써 **처분을 회피**하거나 **더 중한 행정처분을 모면**하고자 하는 **악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 (제재처분 효과 승계) 영업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효과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

- (승계의 범위)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과 **제재적 처분효과의 승계로 구분**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양도인의 위반행위**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게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

- (제재처분 효과 승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처분 전력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가중처분을 부과**

○ (판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 처분 효과 승계 인정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 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임

○ (판례) 대물적 처분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취지**는 승계 **법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

• 청주지방법원 2001.11.12. 선고 2001구230 판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 (중략) 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같은 법 제61조가 규정됨으로써 종전의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리가 분명해졌고, 탈법적으로 양도된 경우가 아니고 양수인이 양수 당시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나 그의 위반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략)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의 의미는, 행정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때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하여 밝혀져서 언제든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판결요지 중에서)

○ **(중행심 재결례) 대물적 처분이라도** 부당한 경우 처분사유 **승계 불인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9. 2. 28. 보도자료)

□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현황

○ **(법률 현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48개 법률에서 48개 규정을 운영**(33P 참고)

○ **(행정규칙 현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31조에서 책임의 승계를 규정

※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행정절차법」 제10조는 지위의 승계에 관한 일반규정 운영

□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내용의 세부 현황

○ (규정 구성) 승계의 **범위**, 승계 **기간**,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 및 양도인이 받은 **처분전력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으로 **구성**

○ **(승계 범위)** 48개의 규정 중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46개 규정은 처분절차의 속행과 처분효과의 승계를 모두 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만 운영**

※ 「골재채취법」 제45조는 구분없이 '처분과 행위'를 승계하도록 규정

○ **(승계 기간)** 기간을 명확히 규정(1년~3년)한 법률이 39개로 81.3%

< 승계 기간에 대한 규정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기간의 기산점(개)	기간(개)	비고
유 (38)	처분일 (16)	1년간 (1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3년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분 기간 끝난 날 (18)	1년간 (17)	공중위생관리법 등
		2년간 (1)	자연재해대책법
	처분 기간 동안 (4)		소음・진동관리법 등
무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9)		가중요건은 1년임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3개 법률**로 0.6%

< 승계에 따른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규정 유형(개)	비고
유 (45)	선의 보호 (13)	고의 입증 행정청, 선의 입증 양수인
	선의 입증 책임 부과 (31)	양수인이 선의 입증
	선의 입증 책임, 처분 효과 승계 제외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무 (3)	골재채취법 제45조,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처분 전력** 등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된 법률이 4개 법률**로 0.8%에 불과

<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규정 유형(개)	양도인의 처분 전력 공개 법률
유 (4)	선의 보호 (13개 중에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선의 입증 책임 부과 (31개 중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선의 입증 책임, 처분 효과 승계 제외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처분전력을 이유로 가중처분을 하는 규정)** 승계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률 중에 양도인이 처분받은 전력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가중처분을 하는 법률이 7개로 가중할지 판단 기간은 1년임

< 승계기간이 정하지 않은 법률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 현황 >

법률	가중요건 (대령, 시행규칙)	비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년 (규칙 별표 2)	규칙 12조
골재채취법 제45조	1년 (령 별표 1의2, 4)	령 24조, 32조의2조
농어촌정비법 제90조	1년 (규칙 별표 6)	규칙 6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1년 (규칙 별표 2)	규칙 9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1년 (령 별표 1)	령 17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1년, 3년 (규칙 별표 1)	규칙 1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1년 (규칙 별표 8)	규칙 20조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가중 규정 없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중 규정 없음	-

□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의 대표적인 사례 예시

「골재채취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참고] 양도인의 위법행위 공표 제도

○ **국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영업**의 경우, **영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실**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

-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위반행위를 고지**하거나 **해당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구**

-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공개**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가 곤란**한 경우 발생 가능

○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제도 현황)** 「약사법」 제81조의3 등 11개 법률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

<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규정 현황(개)	공표의 범위
유	약사법 제81조의3 (11)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7)	-

<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 사례 >

「약사법」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뒷면, 발췌)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분석

○ 국민신문고 상에 나타난 **민원 17,746건**, **국민제안 36건**에서 유의미한 민원 **발굴하여 검토**(행정처분 승계로 키워드 검색)

- **민원**의 대부분은 승계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의 취지**와 양수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안에서 승계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

- **국민제안**은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의해 **선의의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고 있으니, 처분 전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

○ 국민신문고 상의 **제도개선 제안, 민원 및 행정청 답변사례 등**

〈제안 사례〉

■ 어선 임대로 지위 승계까지 마친 상태이면 수산업법 관련 위반 행정처분통지가 원선주에게 지위 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지위 승계까지 마친 상태가 되면 불법어업을 한 임차인은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까지 가는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15. 6월)

■ 그런데 이번 설립자변경 및 상호변경 신청 때문에 관할 ☆☆교육청을 방문한 결과 전 설립자의 행정처분이 있어서 이것도 함께 승계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미 승계를 마친 상태라 어찌할 수도 없고 해서.... 행정처분(법규위반) 등을 받은 자 개인의 잘못이니 다음에 또 다른 유사 학원을 할 때는 그 법규 잔여기간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신문고 '10. 12월)

■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제재의 처분 효과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데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이전 행정제재의 처분을 모르는 상태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지위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남.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 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의 존재를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국민신문고 '18. 6월)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고, 양수인이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는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수인이 관련 행정처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변경신고서에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처럼 관련 내용을 기재. (국민신문고 '10. 11월)

■ 유치원을 하다가 관리동 어린이집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받고 보니 종전 시설장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금이 6개월간 정지되어 운영이 어렵게 6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자로 6개월이 지나 정지가 해소되어 2009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었으나 "행정 처분받은 어린이집'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달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대표자/시설장이 모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 차례 "감사"와 환경

개선금, 여러 지원금이 일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09. 10월)

■ 부동산 중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고의로 폐업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재로는 행정처분 승계를 공문으로 전국에 발송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회가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함. KL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입력하고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국민신문고 '08. 6월)

■ 운송사업용 차량 양도 양수 시 관련법에 의거 양수인에게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됨.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양도 양수 시 행정처분 승계됨. 그런데 중대 교통사고 및 빈번한 교통사고는 전년도 사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시점에서 양수인이 현제 양도 양수 신청서에 의해서는 알 수 없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됨 (국민신문고 '12. 8월) 등

〈민원 사례〉

■ 「체육시설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지위 승계받은 자가 종전의 업자의 위반사실, 처분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사인 간 양도 양수 계약에서 양도인이 의도하건 않았든지 행정처분 사실(위반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양수인이 단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처분 효과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 효과는 승계되고, 위반 사실을 숨겼는지,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는 당사자 간 쟁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예시가 있는지? (중략) 처분청이 상기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절차, 방법,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1. 9월)

■ 비료생산시설 및 생산업에 대한 양도 양수를 하고 지자체에 비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21조의2 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이전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을 3회를 하였는데, 변경 신고한 이력이 없다며 3회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영업 승계를 이유로 상기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위반 사유에 해당하나요? 설령 한다고 해도 승계자에게 새롭게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22. 5월)

■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에 문의, 상담을 하였으며, 허가를 내주시는 분도 모르시는 사항들을 민원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중략) 하지만 담당자분은 그 전에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녹취 내역(행정처분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주변 주유소들의 행정처분 소문난 뒤의 얘기들, 주변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22. 3월)

■ ㄹ당구장(대표 A씨) 영업 중 불법 게임기 운영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진행 중에 체육시설업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여 수리됨에 따라 ㄹ당구장 대표가 A씨에서 B씨로 변경되었고 행정처분사항 또한 B씨에게 승계되었습니다. B씨 또한 변경 신고 당시 ㄹ당구장이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서야 A씨가 한 일로 인해 자신이 시정명령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시정명령 후 1년 이내에 불법 게임기 운영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3일 받는 것에 대한 우려) 애초에 ㄹ당구장을 폐업으로 처리하고, 본인은 신규 신고를 해야

했는데,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19. 1월)

- 위와 같이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양수인의 책임 승계 범위는 화물 운송사업자가 이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화물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책임까지도 양수인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사건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증차로 양도•양수된 차량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역시 양도인의 위반행위이며, 양도 전에 행정상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다가 최종 양수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처분을 하면서 책임을 부담하라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국민신문고 '19. 9월)
- 폐사에서는 "A정제"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양수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사에서 "해당 제형(정제)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처분기간은 "12월 동안"임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사에서는 11월 중에 "A정제" 품목허가 양도양수를 완료하고자 하며, 이때 양도사의 행정처분이 승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2. 10월)
- A사의 불법행위(법 제8조 제1항)가 발생한 날짜는 2020년 4월 2일인데, 현재 본인이 운영중인 C사는 A사(2015년 2월 13일-2020년 4월 7일)에서 B사가 2020년 4월 7일 A사로부터 인수하여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 운영하였고, 2020년 6월 16일 B사로부터 인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시청 폐기물지도과에서 종전 폐기물업자가 2020년 4월 2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33조(권리 의무 승계) 제1항에 근거하여 종전 폐기물사업자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허가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행위는 2020년 4월 2일 폐기물처리업을 최초로 설립한 A사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재 A사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B사에서 인수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할 시청에 제출한 "권리 의무 승계 신고서" 내용에서 승계대상에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21. 1월)
- '19.5.15일경 영업양도를 하였는데요, 당시 인수받은 영업장이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어서 이후 같은 내용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이 가중될 것은 고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도 당시엔 몰랐던 내용인데, 19년 5월 초에 기존 대표자가 적발된 내용이 6월 10일경 관계구청으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수 시에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신문고 '19. 9월) 등 다수

〈행정청 답변 사례〉

- 행정처분 승계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닌 경우 공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2. 8월)
- 화물자동차 양수 시 양도 차량의 행정처분 내역도 같이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양도 차량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통합한도시스템(www.truckcard.co.kr)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운송사업자(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행정처분 내역은 민감정보로서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거나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신문고 '22. 5월)

Ⅲ. 문제점

■ 경기침체의 장기화나 단기로 영업자가 순환되는 경제여건 상 원활한 영업의 양도.양수는 경기 활성화에 긴요한 요건. 행정제재 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를 하거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존

1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의 미비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의 흠결 입법 사례

○ 위반행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양도함으로써 **처분을 회피**하거나 **더 중한 행정처분을 모면**하고자 하는 **악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 그러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더 중한 행정처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계를 인정하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 규정**

-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반할 우려**(판례에 따르면 대물적 처분인 경우 승계 인정됨)

-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48개의 법률 중**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유일**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서 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은 무의미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용 >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의 미정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 규정의 미비

○ 행정제재 처분 효과 규정을 특별히 두는 취지는 승계 법리를 명확히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9개 **법률은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미정**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두지 않은 규정 사례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골재채취법」 제45조 • 「농어촌정비법」 제90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 「전기사업법」 제11조의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여 **무기한 승계도 가능**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사항을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

-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제재를 하기 위한 요건**을 양도인이 **최근 1년 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석유정제업자 등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을 위반한 경우, **최근 3년 처분 전력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가중을 하도록 규정**

-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제6항은 석유정제업이 **취소된 후 2년 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위법행위로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이 경과하면 새로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의 효과를 3년 동안 승계하도록 하여 과잉행정 야기 및 형평성에 반함**

- 단, 「**전기사업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미규정**

< 승계기간이 없고, 가중제재를 위한 처분 전력이 1년인 법률의 세부 현황 >

※ 표 설명 : [○×(유/무), 구체적 내용 / 해당 조문], 승계 범위 : [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 유무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 유무]

구분	영업허가 요건·결격사유 등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가중처분 요건 등
	허가 등	인적요건	결격사유	위반자의 영업제한	승계범위	승계기간	선의보호	정보고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고, 등록	없음	○	없음	○	없음	선의 보호	×	가중요건 1년
	3, 4조		6조		○				
골재채취법 제45조	등록	없음	○	없음	처분과 행위 승계	없음	×	×	가중요건 1년
	14조		15조						
농어촌정비법 제90조	신고	민박(주민)	없음	없음	○	없음	선의 증명	×	가중요건 1년
	85, 86조	86조2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인증	농업인	○	취소 3년	○	없음	선의 증명	×	가중요건 1년
	8조	규칙 2조	12조	12조4항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신고	없음	○	폐쇄 1년 등	○	없음	선의 증명	×	공표규정 가중요건 1년
	15조		15조2	15조의2 6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등록	없음	○	취소 2년	○	없음	선의 증명	×	가중요건 1년, 3년
	5조		6조	6조6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허가	없음	○	취소 2년	○	없음	선의 증명	×	가중요건 1년
	5조		7조	7조5호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허가	없음	○	취소 2년	○	없음	×	×	×
	7, 7의2조		8조	8조2항(본인)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자	×	×	×	○	없음	×	×	×
	2조 6호	각 업종 근거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 불합리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 규정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의 부적정성

○ 「소음 · 진동관리법」 제50조 등 4개 규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위한 기간을 그 처분기간으로 한정**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정지의 효과를 미치고자 하는 취지라면, 영업정지된 영업권을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기간 규정을 둘 실익이 없고,**

○ **양도인이 받은 제재처분을 이유로** 향후에 **양수인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하고자 하는 의미라면 제도의 취지 훼손 우려**

- 양수받은 사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이므로 무허가 영업으로 제재를 할 수는 있어도 위반전력을 이유로 가중제재는 하기 곤란**

- 한편,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은 **가중처분 요건으로 최근 1년(2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 받는 경우로 규정한 점**에 비춰 **위 규정은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규정으로 보임**

※ 처분 기간이 지난 후 양수인의 위법행위는 가중할 수 없는 공백 발생하고, 단서 규정의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제재 면제되는 규정과도 부조화

< 승계기간을 그 처분 기간으로 정한 법률 사례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50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4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공백

□ 양수인 보호 규정의 모호성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제재적 처분 사유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양수인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때에는 승계를 면제하도록 규정**

>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선의 양수인 보호는 제1항에 단서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

○ (선의 해석의 모호성)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적용의 혼란이 예상**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미비

○ 포괄적 지위 승계 규정 외에 **행정처분 효과 승계 규정을 따로 두는** 취지는 **승계법리를 명확히 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취지 달성** 필요

- 처분효과 승계 규정을 둔 48개 법률 중 『골재채취법』 제45조 등 **3개 법률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미비**

● **골재채취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5 선의의 양수인 실질적 보호 규정 미흡

□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을 양수인에게 공개할 필요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의를 입증하여야 구제가 가능

-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을 둔 44개 법률이 **선의이거나 선의임을 입증할 때에 승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선의 입증이 곤란**

※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행정청 민원 답변 사례)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등 **4개 법률은** 양수인의 선의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략)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생략)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② (생략)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생략)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 선의 및 악의 입증 곤란

○ 악의의 양도·양수인이 짜고 선의를 가장할 경우, **행정청은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곤란**

- **양수인이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29개 규정**이고, **행정청이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15개 규정**

□ 양도인의 위반행위 사실 등에 대한 고지 규정이 없는 법률

〈양수인이 선의 입증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 • 농약관리법 제5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90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 먹는물관리법 제 49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2 • 비료관리법 제21조의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78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양곡관리법 제21의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 화장품법 제26조의2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 〈행정청이 악의 입증 필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골재채취법 제45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약사법 제89조의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의료기기법 제48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참고) 위반사실 공표제도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 제도로 보기 곤란

○ **위반사실 공표제도**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심리적 강제 효과를 기하기 위한 제도**

- **확정된 행정처분에 한해 공표가 가능하고, 공표 사항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곤란**

□ (참고) 판례 평석 사례

○ 행정청이 종전처분이나 **종전 위반사실을 고지**하거나 **승계인이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승계인의 종전처분 또는 위반사실에 관한 선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085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법에는 제재처분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제재처분 승계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선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상 판결의 해당조항과 같이 그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아닌 처분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 원심은 이에 대해 정황상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도로 입증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았으나(엄밀히 보면 행정청이 원고 갑에 대해 명시적으로 종전 제재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상 그 불이익은 행정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사안을 알고 있었던 병 회사 대표나 술이 관여한 이상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선의 인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볼 때 완벽하게 선의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의 승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처분 승계조항의 목적 자체가 행정제재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있는 만큼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와 같은 입장은 비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사업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제재처분 승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선량하게 승계 받은 사람의 불의타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등록시 행정청이 종전처분이나 종전 위반사실을 고지하거나 승계인이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로앤비)

Ⅳ. 국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결과

1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생각함

□ 조사개요

- ◆ 설문기간 : '23.4.28. ~ 5.7. (10일간) / 설문참여 : **총 1,575명**
- ◆ 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 방식
- ◆ 내용 :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방안 등 4개 문항

□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연령 분포

- 30~40대가 1,159명으로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 (73.6%)에 해당

  * 30대(40.7%) > 40대(32.9%) > 20대 이하(8.8%) > 50대(11.6%) > 60대 이상(6.0%)

○ (영업 양수에 대한 관심 정도) 본인이나 지인이 영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운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967명(61.39%)임

□ 개선방안 관련 설문 결과

○ (영업 양수 경험 또는 양수 의사) 응답자 중에 영업권을 양수하였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55%(245명)

○ (선의의 양수인 보호 의식)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30.47%(4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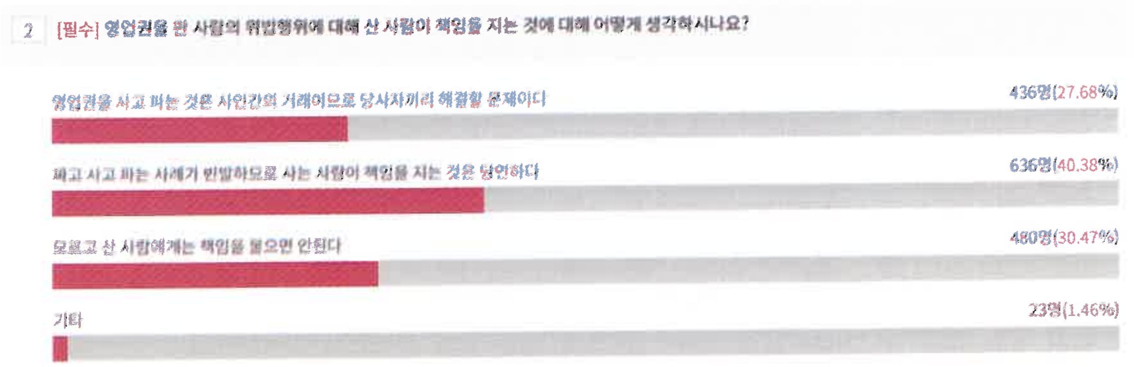

○ (양수인의 선의 입증책임에 대한 의견) 몰랐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전체의 57.71%(9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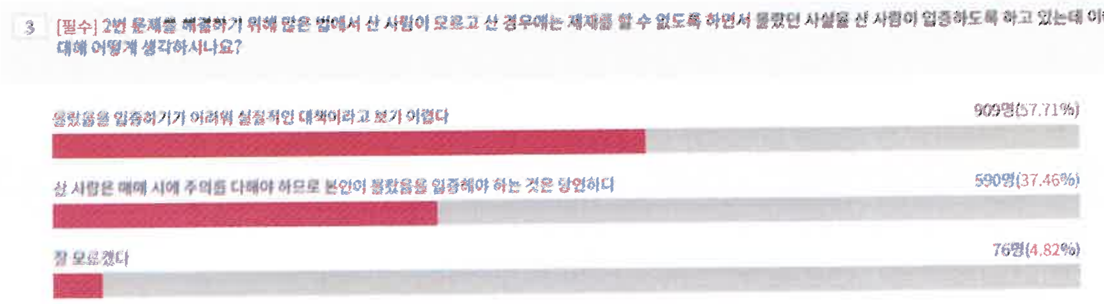

○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행정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86.5%(1,36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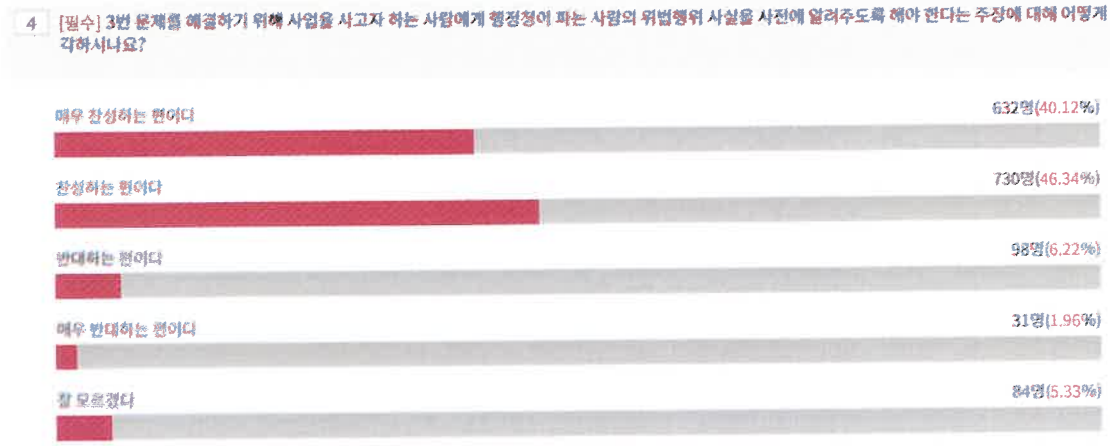

○ 기타 자유 의견

- 악의의 양수인과 선의의 양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의의 양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도 쉽지 않기에 양도받을 시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 정보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수인이 구입을 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악의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법 사실들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당사자들끼리 이런 공지를 하게 하면 입증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중간 역할을 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머리를 까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선의의 구매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권의 활발한 거래도 주춤할 것입니다. 결국 내수거래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무지가 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는 위법한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처벌도 위법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지의 증명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처벌의 주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시 알리바이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듯, 구매자의 무지 역시 처벌 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 사기인지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편법 양도를 방지하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홍보도 충실히 할 필요
- 행정청에서 사전 확인을 해서 더 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투명하고 신뢰가 밑바탕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투명하고 청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과 협조하여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가길 기원
- 사고파는 행위에 앞서 반드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양수인과 양도인의 충돌이 우려되기 쉬운 법 제도를 지금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AI로봇,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의 사전 교육이 불상사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 그러나 일단 미리 국가에서 주의를 주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교육해준다면 양수인이 속는 일을 많이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양도인의 사기를 양수인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양도인이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지금의 처벌보다 더 강화하여 사기 칠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불법이라는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청이 위법 사실을 사업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고지하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 대형트럭도 번호판 장사 있는데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을 의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전문가 자문 결과

□ 개 요

◆ 자문 기간 : '23.4.27. ~ '23.5.10.

◆ 대상 : B ☆☆대 법전원 교수 등 3명

◆ 자문 내용 : 정보제공 방안의 타당성 등

◆ 자문 방식 : 서면 자문의견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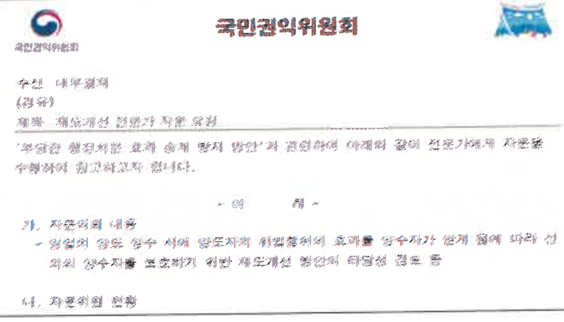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 요청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수행하여 참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자문의뢰 내용
- 영업의 양도 양수 시에 양도자의 위법행위의 효과를 양수자가 알게 됨에 따라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타당성 검토 등

나. 자문위원 현황

□ 자문 결과

대상자	주요 의견
A 전, 중행심 상임위원 (전 고위공무원)	- (과제 1)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처분사유 승계가 구분되나 이에 관하여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법문의 표현을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개정할 필요 있음.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경우 승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 (과제 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어 승계인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승계 기간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 있음. 또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체계에 맞게 개정해야 함.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규정에 승계기간을 명시함이 바람직함. 같은 법률에서 일정한 사유로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등록 제한기간이 2년인 점에서(제6조제6호 참조) 이와 균형이 맞는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기간을 설정할 필요 있음(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그 사유에 따라 가중기간을 최근 1년 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제 3) 일부 법률은 그 처분기간 내에 한정하여 제재처분이 승계되도록 하여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음. 처분 기간 내에만 승계하도록 한 승계기간을 행정제재처분 승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승계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음 · 진동관리법」 제50조 등은 일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제 4)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있어서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을

대상자	주요 의견
	받은 사실이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 위반 사실을 양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등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제 5) 개선방안은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청이 악의의 양수인임을 입증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양수인 등에게 제공하는 개선방안은 바람직함. 다만, 제재처분 정보제공 요청의 악용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 요청 시 피승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 ※ (참고 검토사항) 법제처에서 위 제도개선 방안과 같은 취지로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5월 10일 공청회, 연내 개정 및 공포 후 6월 경과 후 시행) 중이므로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행정기본법이 개정된다면 제도개선의 실익이 적을 것임.
B ☆☆대 법전원 교수	- (과제 1) 여기서 미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처럼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이 없는 법률의 경우,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은 타당 - (과제 2) 제재처분 효과 승계기간을 두지 않고 무한정 승계시키는 것은, 특히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처럼 처분전력이 장래의 가중적 제재처분의 요건이 될 경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됨. 따라서 처분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 - (과제 3)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등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처분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 - (과제 4)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경우나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을 두는 경우 모두 선의의 양수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양자의 경우 모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과제 5)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 여부 및 양도인에게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대상자	주요 의견
	※ (참고 검토사항)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는 피승계인이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 아직 제재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공법상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문제임. 한편,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은 아직 피승계인에게 제재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이미 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단계이므로, 이중행정을 방지하고 제재처분 회피 의도로 양도·양수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적 규율을 할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라는 표현보다는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C ★★대 법전원 교수	- (과제 1) 진행 중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속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유사 과정과의 형평성 상 타당하다고 생각됨. - (과제 2) 사견으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가중제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가중제제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가중제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찬성함. - (과제 3) 행위자가 아닌 승계인에게 가중제재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개별법에서 경우에 따라 적절히 필요한 경우 가중제제 규정을 두는 경우, 두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소관 부처에 차별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가 적절함. - (과제 4) 문제점과 보완방안 모두 타당함 - (과제 5) 양도, 합병의 경우 계약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의 제재처분 또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계약 체결 여부 또는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 시점은 계약 이전이라야 한다고 생각됨.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 규정을 둘 수 있음. ※ (참고 검토사항) 첫째, 양도인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물론 양수인에게 알릴 유인이 없을 것이므로, 선의의 양수인이 알 가능성이 매우 낮음. 또한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위반행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후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자기책임원칙상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양도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중요함. 둘째,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것은 행위자가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임. 위반행위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이를 가중사유로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영업양도를 상습 가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양수의 비용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등

Ⅴ. 개선방안

1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 마련

[환경부]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의 흠결 상태 보완

○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하고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는 폐단을 방지할 필요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이 없는 법률에 승계 규정 마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4조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신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00조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 마련으로 불확정성 해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 방지

○ 행정제재 처분 효과 규정을 특별히 두는 취지는 승계 법리를 명확히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

-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등은 승계 기간을 미정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 규정의 취지 달성**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골재채취법」 제45조,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전기사업법」 제11조의1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등 9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0년간)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승계기간 기산점은 처분일임. 가중처분 기간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기간을 설정해 주기 바람

3 제도취지에 어긋난 승계기간 취지에 맞게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 행정처분 효과 승계 취지에 맞게 기간 설정

○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기간을 두는 취지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양도인의 **처분 전력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가중처분을 부과하기 위함**

- 그러나, 「소음 · 진동관리법」 제50조 등 4개 규정은 **그 처분기간 내에 한정하여 승계**하도록 하여 **제도 취지를 무력화**

○ 처분 기간 내에만 승계하도록 한 승계기간을 **행정처분 효과 승계 취지에 맞게 기간 설정**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음 · 진동관리법」,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음 • 진동관리법」 제50조 등의 4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u>(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0년간)</u>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u>단,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승계기간 기산점은 처분일임. 가중처분 기간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기간을 설정해 주기 바람</u>

4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 보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제재효과 승계 방지

○ 행정제재 처분 효과 규정을 특별히 두는 취지는 승계 법리를 명확히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

-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등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미비하여 양수인이 선의라도 양도인의 위법행위의 책임 부담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방지**

-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전기사업법」, 「골재채취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등의 4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전기사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

□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선·악의 입증의 편의성 제고 규정 마련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청이 악의의 양수인임을 입증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

-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

○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및 **행정청의 입증책임 완화** 효과 기대

※ 양도인 동의나 양도·양수 계약의 일정 절차 진행을 전제로 공개할 수 있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할 허가나 승인한 사례가 없어서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43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② (생략) (신설)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영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Ⅵ.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4년 8월까지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1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 마련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이 없는 법률에 승계 규정 마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	환경부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 마련으로 불확정성 해소	○ 영업 취소 후 영업제한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잉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등 9개 규정에 반영**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3 제도취지에 어긋난 승계기간 취지에 맞게 개선	○ 행정처분 효과 승계 취지에 맞게 승계 기간 설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등의 4개 규정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4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 보완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방지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등의 4개 규정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5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43개 규정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

※ 단, 과제 2, 4, 5번은 권고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 정책제안으로 전환

붙임 1 과제 5 관련 대상 법령 및 피권고 기관 목록

피권고 기관	대상 법령 조문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45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비료관리법 제21조의2,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제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8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식품위생법 제78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 화장품법 제26조의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의료기기법 제48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의2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49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

붙임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골재채취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5(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
2.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4.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일
5.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 행정제재처분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약관리법**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촌정비법**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부분 발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처분(적발) 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먹는물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료관리법**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 마. (생략)

2. 개별기준(생략)

위 반 사 항	근 거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 바. (생략)

2. 개별기준(생략)

위 반 사 항	근 거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이상

● 소음 · 진동관리법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 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생략)

위 반 사 항	근 거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이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이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사법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과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곡관리법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2. 개별기준(생략)

위 반 사 항	근 거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		
처분(위반) 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자에게 부과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 **의료기기법**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 및 제3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와 의료기기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54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승계(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

항 목	위반사항	적용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취소	효력정지				경고
				6월	3월	1월	15일	

비고

1. (생략)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의2. ~ 3.(생략)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장품법**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규칙 상의 행정재제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참고 1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입법례 비교

□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에 대한 입법례 비교 조사

※ 표 설명 : [○×(유/무), 구체적 내용 / 해당 조문], 승계 범위 : [처분 효과 승계 여부 / 처분 절차의 속행 여부], 면색 : [공표 규정 유]

구분	영업허가 요건·결격사유 등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기타
	허가 등	인적요건	결격사유	위반자의 영업제한	승계범위	승계기간	선의보호	정보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허가, 신고	없음	없음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규칙 별지 28호 신고서식에 반영
	5~7조			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록, 허가	없음	없음	○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25, 26조			27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고, 등록	없음	○	없음	○	없음	선의 보호	×	규칙 별지 5호 신고서식에 반영
	3, 4조		6조		○				
골재채취법 제45조	등록	없음	○	없음	처분과 행위 승계	없음	×	×	
	14조		15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신고	이.미용업 자격요건 규칙 3조	없음	없음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보호	×	규칙 별지 6호 신고서식에 반영
	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허가, 등록	없음	없음	없음	○	처분 날 1년간	선의 증명	×	
	10, 1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지정	없음	○	없음	○	처분 날 3년간	선의 증명	○	시행규칙 고지방법
	31조		32조의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	인증	없음	없음	없음	○	처분 날 1년간	선의 증명	×	
	9, 11, 17조				○				
농약관리법 제5조의2	등록, 신고	없음	○	취소 2년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3, 3조의2		4조	4조	○				
농어촌정비법 제90조	신고	민박(주민)	없음	없음	○	없음	선의 증명	×	
	85, 86조	86조2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인증	농업인	○	취소 3년	○	없음	선의 증명	×	
	8조	규칙 2조	12조	12조4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등록	경력 2년 등	○	취소 3년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시행규칙 고지방법
	26조	26조2항	27조	27조4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허가	없음	○	취소 2년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3조		4조	4조5항	○				
먹는물관리법 제49조	허가, 등록, 신고	없음	없음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21조			24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신고	없음	○	폐쇄 1년 등	○	없음	선의 증명	×	규칙 별지 15호 신고서식에 반영
	15조		15조2	15조의2 6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	신고	없음	없음	폐쇄 1년 등	○	처분 날 1년간, 기간 동안	선의 보호	×	
	10조의3			10조의3 3항	○				
문화재보호법	허가	학위 등	○	취소 5년	○	기간 끝난	선의 증명	×	

구분	영업허가 요건·결격사유 등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기타
	허가 등	인적요건	결격사유	위반자의 영업제한	승계범위	승계기간	선의보호	정보고지	
제80조의2	75조	76조	77조	77조3호	○	날 1년간			
비료관리법 제21조의2	등록, 신고 11, 12조	없음	없음	없음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3조	허가, 승인 4조	없음	○ 6조	취소 2년 등 6조1호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허가,승인 사례가 전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록 16조	없음	○ 17조	취소 2년 등 17조7호	○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규칙 별지 7호 신고서식에 반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록 15조	기술자격 15조1항1호	○ 16조	취소 2년 등 16조2호	○ ○	기간 동안	선의 증명 효과승계 ?	○	시행규칙 고지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등록 5조	없음	○ 6조	취소 2년 6조6호	○ ○	없음	선의 증명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신고, 허가 8, 9조	없음	없음	없음	○ ○	기간 동안	선의 증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	등록 15조	없음	피성년후견인 등 15조7항5호	취소 2년 등 15조7항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고, 등록 2조11호	없음	없음	없음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식품위생법 제78조	허가, 등록 37조	없음	없음	○ 38조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정 6, 8조	없음	선고유예 등 6조6항	취소 2년 등 10조3항1호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허가 5조	없음	○ 7조	취소 2년 7조5호	○ ○	없음	선의 증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등록 16조의2	없음	○ 16조의3	취소 2년 16조의3 4호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약사법 제89조의2	허가·신고등 31조 등	일부 약사 등	일부 ○ 46조	일부 취소 1년 46조2호	○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규칙 별지 7호의2 신고서식에 반영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신고 19조	없음	없음	없음	○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신고 21조	없음	없음	상실 1년 22조	○ ○	기간 동안	선의 증명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인가 13, 14조	없음	○ 16조	폐쇄 5년 16조7호	○ ○	처분 날 1년간	선의 증명	○	시행규칙 고지방법
영화 및	신고, 등록	없음	없음	○	○	처분 날	선의 보호	×	

구분	영업허가 요건·결격사유 등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				기타
	허가 등	인적요건	결격사유	위반자의 영업제한	승계범위	승계기간	선의보호	정보고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57, 58조			59조	○	1년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예술기획 등 업으로 하는 자(2조7항)	×	×	×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각 업종 근거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	신고	없음	없음	폐쇄 6월, 2년	○	처분 날 1년간	선의 증명	×	규칙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
	3조			5조	○				
의료기기법 제48조	허가, 신고	없음	○	취소 1년,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6,15~17조		6조	6조1항5호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허가	의료기관 등	없음	없음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13조	13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의2	등록	경력 등	○	없음	○	기간 끝난 날 2년간	선의 증명	×	
	38조의2	령 32조의4	39조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허가	없음	○	취소 2년	○	없음	×	×	
	7, 7의2조		8조	8조2항(본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가, 신고	×	×	×	○	처분 날 1년간	선의 보호	×	
	23조 등	각 업종 근거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등록, 신고	없음	없음	취소 6(계획)	○	처분 날 1년간	선의 증명	×	
	12,19,20조			13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허가	없음	○	취소 6월, 3년	○	기간 동안	선의 보호	×	
	4,6,6조의2 ,25조		5조	4, 5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등록	○	○	취소 2년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5조의3	령 2조	5조	5조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지정, 등록	없음	○	취소 2년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23조의2, 7		23조의3	23조의3 3호	○				
화장품법 제26조의2	등록, 신고	없음	○	취소 1년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규칙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
	3, 3조의2		3조의3	3조의3 5호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자	×	×	×	○	없음	×	×	
	2조 6호	각 업종 근거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	등록	없음	○	취소 2년(6월)	○	기간 끝난 날 1년간	선의 증명	×	
	54조		55조	55조 3호	○				

참고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가안('23.5.10. 공청회 자료 중에서)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가안(단, 제5조는 현행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영업자의 공법상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신설)

제38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절에서 "영업자지위승계"란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되고 그 결과로 피승계인과 승계인 사이에 해당 영업 또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영업자지위승계의 사유 및 방법) ①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법률로 정한다.

1.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2.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사망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에 영업 또는 사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른 영업 또는 사업 시설의 전부 인수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승계인 또는 피승계인(영업자지위승계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통보 등을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통보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승계인(승계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승계인이 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승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피승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승계) ① 영업자지위승계가 되는 경우 피승계인에게 행정 제재처분의 이력은 그 제재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고, 행정청은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법39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영업자의지위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승계되거나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처분으로 한다.

1. 정지, 취소, 철회 또는 등록말소
2. 영업소.사업소 폐쇄명령 또는 폐쇄조치
3.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가산금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효과 승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률로 정하는 제재처분

③ 승계인이 되려는 자는 피승계인(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영업자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그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를 미리 해당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승계인이 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승계인이 해당 제재처분이나 그와 관련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본입니다.

2023. 7. 12.

국민권익위원회

ACRC